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731-6156 / 전송(02)731-6562  
 처리부서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 3층)/ 법무담당관 막돌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운영권

문서번호 법무 11010- 2900  
 시행일자 1999. 7. 28. (년)  
 (경유) (제1안)  
 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취급    |     |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 |                    |
| 보존    | 영구  | 결재<br>1999. 7. 28<br>기획예산<br>28 |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획예산실 | 전 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
| 법담당관  | 막돌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안    | 운영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◎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<br>합조 |

## 제목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 발령

1.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7. 31. (토)

훈령 제 903 ~ 904 호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3~904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  
 2. 발령안 각1부. 끝.

# 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

합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7. 31.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3~904호

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
2. 발령안 각2부. 끝.

## 법 무 담 당 관

(제3안)

수신 : 받는 곳 참조

제목 : 훈령 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  
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 
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7. 31.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3~904호

첨부 : 발령목록 각1부. 끝.



## 서울특별시장

(전결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받는 곳 : 인사행정과장,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

# 훈령 발령 목록

□ 총 2 건 ( 페이지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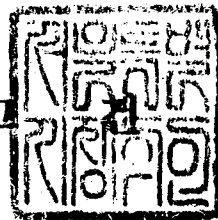
| 연 번 | 법 규 명                  | 번 호   | 주 관 부 서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 |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   | 제903호 | 교통운영개선<br>기획단 |
| 2   | 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수습규정폐지규정 | 제904호 | 인사행정과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

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9년 7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#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안

## 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가 공사장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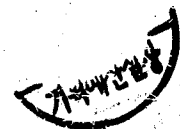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도로법 제22조 및 도로교통법 제64조제6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(폐지 결정)

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##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기외예산실장